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51
----------	------

발의연월일 : 2021. 4. 8.

발 의 자 : 신영대 · 이상직 · 강선우
오영훈 · 이개호 · 김성주
주철현 · 위성곤 · 양정숙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 진학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학생의 재학기간에도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취업난 가중으로 취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6조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외국인 및 대학원생은”을 “대학원생을 포함하며, 외국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경우”를 “경우(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현역병”을 “현역병의 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상근예비역”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체복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생의 재학기간(휴학기간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u>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u>)을 말한다.	4. ----- ----- ----- ----- <u>대학원생을 포함하</u> <u>며, 외국인</u> 은-----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u>경우</u> 를 말한다.	9. ----- ----- --- <u>경우(수료를 포함한다)</u> --- -----.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경우 그 기간</u> 에----- -----.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u>현역병</u>	1. ----- <u>현역병의 복무기간</u>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u>상근예비역</u>	2. ----- <u>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u>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u>대체복무요원</u> <u><신 설></u>	3. ----- -----<u>대체복무요원</u> 의 복무기간 4. <u>대학생의 재학기간(휴학기간은 제외한다)</u>
--	--